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588 발의연월일: 2025. 5. 23.

발 의 자:정춘생·위성곤·신장식

이해민 · 김준형 · 박은정

김재원 · 황운하 · 서왕진

김선민 · 차규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직 대통령 배우자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을 강제로 사지 결박하고, 아픈 노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며, 욕설을 하는 등 노인 학대 정황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며 국민적 공분 을 사고 있음.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노인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에는 신체억제대 사용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으며, 이에 따라 요양시설에서 신체억제대가 자의적으로 사용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노인학대에 대한 실효적 대응과 예방 대책이 미흡하다 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신체억제대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엄격한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체억제대 사용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구체 적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또한 노인학대 실태조사를 법적 의무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결과를 공표하여 노인학대 예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하며, 노인에게 신체적 폭행이나 폭언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에대해 기존보다 강화된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노인학대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9조의22 신설 등).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39조의2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9조의22(신체억제대 사용) ①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노인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억제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신체억제대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 1. 노인의 자해 또는 타해의 우려가 명백한 경우
 - 2.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신체억제대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노인 또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③ 신체억제대의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2 중 "제39조의9제1호(상해에 한한다)"를 "제39조의9제1호부 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6호"로 한다. 제55조의3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노인실태조사) ① (생 략)	제5조(노인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
	함하여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
	표하고, 이를 노인학대를 예방
	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
	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u>②·③</u> (생 략)	③· <u>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u><신 설></u>	제39조의22(신체억제대 사용) ①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
	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노인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억제대를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체억제대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1. 노인의 자해 또는 타해의 우
	려가 명백한 경우
	2.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신체억
	제대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5조의2(벌칙) <u>제39조의9제1호</u> 전 (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의3(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략)
- 2.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② ③ (생 략)

<u>3</u> . 노	-인	또는	ユ	보호자의	동의
를	받	은 경	<u>우</u>		

 ③ 신체억제대의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저	55조	의2(벌칙)	2	제39조	의9제	1호
	<u>부터</u>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u>제6호</u>	<u></u>				

·	
제55조의3(벌칙)	①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② · ③ (현행과 같음)